

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담당자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			생년월일		
	주소			전화번호		
수상레저 기구제원	종류			기구명	총톤수	
	재질			정원	활동인원	
신고사항	출항	일시		장소	주 활동지	
	입항예정	일시		장소		
	동승자	성명		생년월일	전화번호	
	※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					
	①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	선박명(총톤수)		항해구역	운항자 성명(전화번호)	
	② 선단의 구성	기구의 명칭	운항자 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	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날인)

해양경찰서장
경 찰 서 장 귀하

유의사항

-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원거리 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①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또는 ② 선단의 구성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*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: 수상오토바이, 20톤 미만 모터보트, 20톤 미만 세일링 요트, 30마력 이상 고무보트
- 선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.